

2  
0  
1  
3

#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香港國際仲裁中心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 서론

홍콩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은 기관 중재의 정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홍콩국제중재센터(이하 “HKIAC”)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였다.

## 적용범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또는 발생 이후 언제든지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중재합의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제1조에서 규정한다.

## 효력

이 규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표준중재조항

1. 계약의 당사자들이 장래의 분쟁을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준중재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존부,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다툼, 의견 차이 또는 청구 및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책임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재신청을 제출할 당시에 유효한 HKIAC 중재규칙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중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당해 중재조항의 준거법은 (홍콩법) 으로 한다.

중재지는 (홍콩) 으로 한다.

\*\* 중재인의 수는 (1명 또는 3명) 으로 한다.

중재절차는 (언어) 로 진행된다.

- \* 선택 가능. 그러나 실제적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지의 법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본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중재조항의 준거법은 중재조항의 형성, 존재, 범위, 유효성, 합법성, 해석, 종료, 효력 및 집행력 등과 중재조항의 당사자를 규율한다. 이는 실제적 계약의 준거법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 \*\* 선택 가능

- 
2. 현재 계속되는 분쟁의 당사자로서 중재조항 또는 기존의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당해 분쟁을 이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회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본인들은 다음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의 존부,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에 대한 분쟁, 다툼, 의견 차이 및 청구(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 책임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를 홍콩국제중재센터 표준중재규칙에 의한 홍콩에서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또는 불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에 대한 간략한 기술)

\* 당해 중재조항의 준거법은 (홍콩법)으로 한다.

중재지는 (홍콩)으로 한다.

\*\* 중재인의 수는 (1명 또는 3명)으로 한다.

중재절차는 (언어를 기입하시오)로 진행된다.

서명: \_\_\_\_\_ (신청인)

서명: \_\_\_\_\_ (피신청인)

날짜: \_\_\_\_\_

- \* 선택 가능. 그러나 실제적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지의 법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본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중재조항의 준거법은 중재조항의 형성, 존재, 범위, 유효성, 합법성, 해석, 종료, 효력 및 집행력 등과 중재조항의 당사자를 규율한다. 이는 실제적 계약의 준거법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 \*\* 선택 가능

# 목차

<b>제1장</b>	<b>총칙</b>	
제1조	적용범위 .....	6
제2조	통지 및 기간의 산정 .....	6
제3조	이 규칙의 해석 .....	8
<b>제2장</b>	<b>중재절차의 개시</b>	
제4조	중재신청 .....	10
제5조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	12
<b>제3장</b>	<b>중재인과 중재판정부</b>	
제6조	중재인의 수 .....	14
제7조	단독중재인의 선정 .....	14
제8조	3인 중재인의 선정 .....	15
제9조	중재판정부의 확정 .....	16
제10조	중재판정부의 수당과 경비 .....	16
제11조	중재판정부의 자격과 기피 .....	18
제12조	중재인의 교체 .....	20
<b>제4장</b>	<b>중재절차</b>	
제13조	일반 조항 .....	21
제14조	중재지 .....	22
제15조	언어 .....	22
제16조	청구이유서 .....	23
제17조	답변이유서 .....	23
제18조	신청서와 답변서의 변경 .....	24
제19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25
제20조	추가서면 .....	26
제21조	기간 .....	26
제22조	증거 및 심리 .....	26
제23조	임시적 처분 및 긴급구제 .....	27
제24조	비용에 대한 담보 .....	29
제25조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	29
제26조	기간의 경과 .....	30

제 27 조	추가 당사자의 참가.....	31
제 28 조	수 개의 중재절차의 병합.....	34
제 29 조	다수 계약에 대한 단일중재.....	36
제 30 조	절차의 종료.....	37
제 31 조	권리의 포기.....	37
<b>제 5 장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의 및 명령</b>		
제 32 조	결의 .....	38
제 33 조	중재 비용 .....	38
제 34 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	39
제 35 조	적용 법규, 우호적 중재 .....	40
제 36 조	합의 기타 종결 사유.....	41
제 37 조	중재판정의 정정 .....	41
제 38 조	중재판정의 해석 .....	42
제 39 조	추가판정 .....	43
제 40 조	비용의 예납.....	43
<b>제 6 항    그 밖의 조항</b>		
제 41 조	신속절차 .....	45
제 42 조	비밀유지 .....	46
제 43 조	면책 .....	47
<b>별 표 1</b>		
	신청요금과 관리요금 .....	48
<b>별 표 2</b>		
	중재판정부의 수당, 경비 그리고 조건	
	-시급으로 계산한 경우 .....	50
<b>별 표 3</b>		
	중재판정부의 수당, 경비 및 조건	
	-분쟁가액에 따라 계산한 경우.....	54
<b>별 표 4</b>		
	긴급중재인 절차.....	58
	감사의 말 .....	63

# 제1장 총칙

## 제1조 적용범위

- 1.1 이 규칙은 다음의 중재합의(분쟁의 발생 전후에 합의하였는지를 불문한다)에 따른 중재에 적용된다: (a)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거나; 또는 (b) 아래의 규칙 제1.2조, 제1.3조의 조항에 의하여 “HKIAC에서 관리하는”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합의가 있는 경우.
- 1.2 이 규칙 어느 조항도 중재합의 또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이 규칙에 규정된 조항에 복속시키지 않더라도, HKIAC를 중재인 선임기관으로 지정하거나 HKIAC의 관리업무를 요청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 규칙은 중재합의가 HKIAC가 채택한 규칙을 포함한 다른 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제1.4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1조에 따른 중재로서 중재신청서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된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
- 1.4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23.1조 제28조, 제29조, 제33.4조 그리고 별표4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조 통지 및 기간의 산정

- 2.1 이 규칙에 의한 통지나 서면 교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재인 또는 HKIAC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 (a) 다음주소로 교부송달, 등기송달, 특사 송달된 경우
    - (i) 중재 절차 중에 서면으로 통지된 수신인 자신 혹은 그 대리인의 주소; 또는
    - (ii) (i)이 없는 경우, 관련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 
- (iii) (i) 또는 (ii)가 없는 경우, 송달 당시 수신인이 공적으로 표명한 주소; 또는
  - (iv) (i), (ii) 또는 (iii)이 없는 경우,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또는
- (b) 다음 주소로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송신기록 및 일시가 남는 기타 교신수단을 통하여 전송한 경우:
- (i) 중재절차에 통지한 수신인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의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소); 또는
  - (ii) (i)이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소); 또는
  - (iii) (i) 또는 (ii)가 없는 경우, 송달 당시 수신인이 공적으로 표명한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소)

2.2 통지 또는 교신은 (a)항에 따라 송달된 날 또는 (b)항에 따라 전송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짜에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통지 또는 교신의 수령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수령한 날을 판단한다. 통지 또는 교신이 1명 이상의 당사자 또는 1명 이상의 중재인에게 송달되거나 전송된 경우, (a) 또는 (b)항에 따라 마지막 수령인에게 송달되거나 전송되었을 때 수령한 것으로 본다.

2.3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지, 고지, 교신 또는 의견이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로 간주되는 날의 익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령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에 최초로 도달하는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 
- 2.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HKIAC은 이 규칙에 규정된 기한 또는 HKIAC가 설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기한은 HKIAC가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 이 규칙의 해석

- 3.1 HKIAC는 이 규칙의 모든 조항을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 이 규칙 중 중재판정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해석한다.. 중재판정부와 HKIAC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해석이 우선한다.
- 3.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하는 경우 HKIAC는 판정 이유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 이 규칙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국 판정이며,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항소할 수 없다.
- 3.3 이 규칙에서 “HKIAC”이라 함은 HKIAC 이사회, 위원회, 부속위원회 또는 이들에 의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기구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당시의 HKIAC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의 임원을 의미한다.
- 3.4 이 규칙에서 “신청인”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들을 의미하고, “피신청인”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피신청인들을 의미한다.
- 3.5 이 규칙에서 “추가 당사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추가 당사자들을 말하고 “당사자”이라 하면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추가 당사자들을 포함한다.
- 3.6 이 규칙 상의 “중재판정부”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을 의미한다. 이때 별표4 제1항의 긴급중재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7 이 규칙 상의 “증인”이라 함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증인들을 말하고, “전문가”라 함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 
- 3.8 이 규칙 상의 “신청” 또는 “반대신청”은 당사자들 간에 제기하는 모든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의미한다. 이 규칙 상의 “답변”은 상계항변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 신청 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을 의미한다.
- 3.9 이 규칙 상의 “판정”은 별표4의 긴급중재인의 판정을 제외하고, 잠정판정, 중간판정, 일부판정 또는 종국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 3.10 이 규칙 상의 “중재지”는 1985년 6월 21일에 제정, 2006년 7월 7일에 개정된 UNICTRAL 국제상사모델법 제20.1 조에 의한 중재지를 의미한다.
- 3.11 이 규칙은 필요에 따라 HKIAC가 개정하는, 중재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첨부된 모든 별표를 포함한다.
- 3.12 HKIAC는 필요에 따라 규칙을 보완하고 행정처리와 중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발행할 수 있다.
- 3.13 이 규칙의 언어는 영어이다. 영문본과 다른 언어로 작성한 번역문 사이에 의미상 차이 내지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 제 2 장 중재 절차의 개시

### 제 4 조 중재신청

- 4.1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HKIAC의 주소, 팩스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2 중재는 중재신청서 사본이 HKIAC에 접수된 일자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 날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결정된다.
- 4.3 중재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도록 하는 요청;
  - (b)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알고 있는 한) 그들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c) 원용한 중재합의의 사본;
  - (d) 분쟁이 발생한 또는 이와 관련된 계약서 기타 법률문서에 대한 언급;
  - (e) 청구의 성질에 관한 설명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분쟁금액;
  - (f) 신청취지;
  - (g) 당사자들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수(즉, 1인 또는 3인)에 대한 의견;
  - (h) 제7조에 의한 신청인의 단독중재인 신청서, 또는 제8조에 의한 신청인의 중재인지정; 그리고
  - (i) 중재신청서의 사본 및 첨부문서가 확인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되었거나, 현재 송부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서

- 
- 4.4 중재신청서와 함께 별표1에 따른 신청요금이 수표 또는 HKIA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 4.5 중재신청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언어로 합의한 언어로 제출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신청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제출한다.
  - 4.6 중재신청에는 제16조의 청구이유서를 첨부할 수 있다.
  - 4.7 중재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신청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HKIAC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정기간 중에 위 보정을 완료하는 경우, 그 중재는 제4.2조에 의해 최초의 신청서가 HKIAC에 도달한 날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이 보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신청서는 제4.2조에 따라 유효하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는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는 이후 신청인이 동일한 신청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8 신청인은 HKIAC에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령한 날짜를 통지하고, 서류검증을 청구해야 한다.

## 제5조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 5.1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HKIAC에 중재신청서에 대한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중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피신청인과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b) 이 규칙에 의해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c) 제4.3조(e)항에 따라 중재신청에 기재된 항목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 (d) 제4.3조(f)항에 따라 중재신청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 (e) 당사자들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수(즉, 1인 또는 3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 (f) 제7조에 의한 단독중재인의 공동지명 또는 제8조에 의한 피신청인의 중재인 지명; 그리고
- (g) 답변서 및 첨부문서 사본이 확인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단에 의하여 상대 당사자에게 송부되었거나, 현재 송부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서

5.2 답변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언어로 제출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답변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제출한다.

5.3 중재신청서가 제16조에 의한 청구이유서를 포함하는 경우,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는 제17조에 의한 답변이유서를 포함할 수 있다.

5.4 반대신청 또는 상계항변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반대신청 또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 기타 법률문서에 관한 언급;
- (b) 반대신청 및/또는 상계항변의 성질에 관한 설명 및 해당되는 경우 대략적인 분쟁금액;
- (c) 반대신청취지.

---

5.5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상계항변 또는 반대신청이 제기되지 않거나, 반대신청 또는 상계항변의 대략적 분쟁금액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HKIAC는 신청인이 제4.3(e)항에 따라 제출한 정보에 의해서 다음 사항을 판단한다.

(a) 제33.1조 (f)항 및 별표1에 따른 HKIAC의 관리요금;

(b) 제10.1조 (b)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수당; 그리고

(c) 제41조(“신속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5.6 신청수수료 납부 및 중재판정부가 확정된 경우, HKIAC는 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 3 장 중재판정부

### 제 6 조 중재인의 수

- 6.1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HKIAC는 중재가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될지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될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6.2 사건이 제41조에 의한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에는 제41조(a)항과 (b)항을 적용한다.

### 제 7 조 단독중재인의 선정

- 7.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내지 제11.4.조에 따라:
- (a)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하고;
  -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여 HKIAC가 단독중재인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러한 HKIAC 이사회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한다.
- 7.2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 제8조 3인 중재인의 선정

8.1 양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이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a)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신청서와 답변서를 통하여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를 합의하지 못하여 HKIAC가 3인의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HKIAC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정해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 (c)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할 세번째 중재인을 선정한다.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8.2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는 분쟁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a)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은 제8.1조(a)항 또는 (b)항의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한다.
- (b) 제8.2조(a)항에 의해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의 지정에는 제8.1조 (c)항이 적용된다.

- 
- (c) 제8.2조(a)항에 의해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에 있어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을 각 대표한다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각 당사자의 중재인 선임에 관계 없이 중재판정부의 모든 구성원을 선정할 수 있다.

8.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선정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1조 내지 제11.4조가 적용된다.

## 제9조 중재판정부 선정의 확정

9.1 당사자들 또는 중재인들이 하는 중재인에 대한 지명은 HKIAC의 확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선정의 효력을 갖는다.

9.2. 중재인 선정은 다음 조건 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각 적용되는 사안에 따라

(a) 별표2; 또는

(b) 별표3;

및 제10조와 당사자들 사이에서 변경하기로 합의한 내용 및 HKIAC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변경사항에 따른다.

## 제10조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

10.1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

(a) 별표2에 포함된 조건에 의한 시급; 또는

(b) 별표3에 포함된 조건에 의한 분쟁 가액에 기한 요금

---

피신청자가 중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수당 및 경비에 대해 합의한 후 HKIAC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별표2의 조건에 의해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비용이 결정된다.

10.2 별표2에 의해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비용이 결정되는 경우

- (a) 각 공동중재인의 수당은 해당 공동중재인을 지정한 당사자와 공동중재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 (b)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의 수당은 그 중재인과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각 경우 별표2의 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 수당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이를 정할 수 있다.

10.3 별표3에 의해 중재판정부의 수당이 결정되는 경우, 그 요금은 별표3과 다음 규칙에 따라 HKIAC에 의해 확정된다.

- (a) 중재판정부의 수당은 분쟁금액, 쟁점의 복잡성, 중재판정부와 제13.4조에 따라 지명된 서기가 투자한 시간 및 화해 등 사유로 인하여 중재 절차가 중간에 종결되는 경우 등 기타 분쟁과 관련된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 (b) 3인의 중재인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HKIAC는 재량으로 단독중재인의 비용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비용을 증액할 권한이 있다.
- (c) 중재인을 지명할 당시 중재판정부가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사자가 중재를 수행하는 등 HKIAC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요금은 별표3에 따른 요금을 초과할 수 있다.

---

## 제 11 조 중재판정부의 자격과 기피

- 11.1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중재판정부는 언제나 당사자들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11.2 일반적으로 제11.3조에 따라 중재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특별히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어떤 당사자와도 같은 국적이어서는 안 된다.
- 11.3 제11.2조의 일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HKIAC가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이 당사자와 같은 국적일 수 있다.
- 11.4 중재인 선정이 승인되기 전에 중재인 후보자는 (a) 중재판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b)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중재인이 일단 승인된 후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미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인은 지체 없이 당사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 11.5 당사자나 대리인은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와 중재사건에 관한 일방적 의사교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재인 후보자에게 분쟁에 관한 일반적 성질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후보자의 자격 여부, 채택 가능성, 공정성 및 독립성을 논의하거나,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들의 세 번째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후보 적합성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은 중재와 관련하여 어떤 의장중재인 후보와도 일방적 의사교환을 할 수 없다.

- 
- 11.6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재인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중재를 지체하게 되는 경우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재인을 직접 지명했거나, 그 선정에 참여한 당사자는 선정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11.7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당해 중재인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제11.6조의 사유를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게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11.8 기피신청은 통지는 HKIAC, 다른 모든 당사자들,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1.9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이 사임하는 경우 또는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위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HKIAC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 기피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11.10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합의하는 경우 모두 제11.6조에 열거된 기피사유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 제 12 조 중재인의 교체

- 12.1 제12.2조, 제27.11조, 제28.6조에 따라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기피 또는 제척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대체되는 중재인 지명 및 선정에 적용되었던 절차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위 규정들은 대체되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지명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12.2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의 대체 중재인을 지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HKIAC는 당사자들과 남은 중재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준 후에;
- (a) 대체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또는
  - (b) 제30.1조에 의해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한 후, 다른 중재인들로 하여금 중재를 진행하게 하고, 중재 판정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12.3 중재인을 교체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인이 교체되거나 교체된 중재인이 임무수행을 중단한 때부터 절차를 재개한다.

## 제 4 장 중재절차

### 제 13 조 일반조항

- 13.1 중재판정부는 사안의 복잡성과 분쟁금액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피하기에 적합한 중재의 절차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기준은 당사자들 간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3.2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초기에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를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과 HKIAC에 제공한다.
- 13.3 제11.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 또는 정보는 동시에 다른 당사자들과 HKIAC 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 13.4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서기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서기는 언제나 공정하고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선정되기 전에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이후 중재과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사유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 13.5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중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13.6 당사자들은 제13.5조에 따라 그들이 선택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가 반대 당사자와 HKIAC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 또는 HKIAC는 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13.7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에 관하여, HKIAC, 중재 판정부,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8 중재판정부는 판정이 유효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 14조 중재지 및 중재장소

14.1 당사자들은 중재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홍콩으로 하되, 중재판정부가 사건의 정황을 고려한 후 다른 장소가 더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원들 간의 상의, 증인과 전문가 및 당사자 신문, 또는 동산과 부동산 및 문서의 조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15조 언어

15.1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중재판정부는 선정된 직후 중재에서 사용할 언어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청구이유서, 답변이유서, 기타 서면 및 구두심리가 있는 경우 당해 심리에서 사용될 언어에 적용된다.

15.2 중재판정부는 청구이유서 또는 답변이유서의 첨부서류 및 중재 절차에 제출된 보충서면 또는 서증이 원어로 제출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중재언어로 작성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제 16 조 청구이유서

- 16.1 청구이유서가 중재신청서에 포함된 경우(또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로 청구이유서를 갈음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피신청인 및 중재판정부의 모든 중재인에게 청구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6.2 청구이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a)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b)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
  - (c) 쟁점;
  - (d) 신청을 뒷받침하는 법적 주장; 그리고
  - (e) 신청취지.
- 16.3 신청인은 청구이유서에 모든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6.4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의 요건들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17 조 답변이유서

- 17.1 답변이유서가 답변서에 첨부된 경우(또는 피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이유서로 갈음하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 및 각 중재인에게 답변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7.2 답변이유서는 청구이유서 사항(제16.2조 (b)항, (c)항 및 (d)항)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답변이유서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해야 한다.

- 
- 17.3 반대신청 또는 상계항변을 할 경우에는, 답변이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반대신청 또는 상계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
  - (b) 쟁점;
  - (c) 반대신청 또는 상계항변을 뒷받침하는 법적 주장; 그리고
  - (d) 신청취지.
- 17.4 피신청인은 답변이유서에 모든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7.5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칙 제 17 조의 요건들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18 조 신청 또는 답변의 변경**

- 18.1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가 진행되는 중에 신청 또는 답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신청이나 답변이 중재재판부의 관할권 범위를 벗어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 18.2 당사자가 신청 또는 답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HKIAC는 관리요금이나 중재판정부 수당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 제 19 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19.1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및 그 범위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당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9.2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는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부라 하더라도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재조항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19.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한 한 답변서에 제기하되 늦어도 제17조에 따른 답변이유서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했거나, 중재인을 지명하는데 참여했어도,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중재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지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후에 이의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 19.4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및 범위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HKIAC의 중재 관리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HKIAC는 중재를 진행할 지 여부 및 중재 절차의 진행 범위에 대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HKIAC가 이 규칙에 따른 중재 합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는 진행된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제19.1조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

19.5 제19.4조에 의한 HKIAC의 판단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허용가능성과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20조 추가서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청구이유서 및 답변이유서에 대한 추가서면을 제출하도록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서면의 제출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 21조 기간

서면(청구이유서 및 답변이유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에 관해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기간 연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22조 증거 및 심리

22.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 또는 답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2.2 중재재판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적합성, 중대성 및 증명력을 판단하며 증거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2.3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사건과 관련이 있고 판정을 내림에 있어 중요한 문서, 서증 또는 기타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것을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문서, 증거물 또는 기타 증거를 채택하거나 기각할 권한을 가진다.

- 
- 22.4 중재판정부는 증거 제출과 구두변론을 위해 구두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서면이나 기타 증거 자료 등을 통한 서면 심리를 할 것인지를 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적절한 시기에 심리를 진행한다. 구두심리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일시와 장소를 적절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22.5 누구라도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의 이름과 주소, 신문 사항의 요지,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이 증언할 언어를 고지하여야 한다.
- 22.6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리의 녹음 및 심리에서 이루어진 구두 진술의 번역을 지시할 수 있다.
- 22.7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중 언제라도 증인 또는 전문가의 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 및 전문가의 신문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 제 23조 임시적 처분과 긴급 구제

- 23.1 별표4에 따른 절차(“긴급중재인 절차”)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임시적 처분이나 보전 처분(“긴급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3.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23.3 임시적 처분은 명령, 판정, 기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중재판정부에 의해 최종 판정이 나기 전에 내려지는 임시적 조치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 (a) 분쟁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상회복한다.
- (b) 중재 절차에 현재 또는 미래의 급박한 손해 또는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손해 또는 영향을 가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삼간다.
- (c) 추후 중재판정의 집행에 공할 책임자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한다.
- (d) 분쟁의 해결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증거를 보존한다.

23.4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23.2조의 임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함에 있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a) 임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판정에 의해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손해가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로 인해 반대 당사자가 입을 실질적인 손해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 (b) 신청한 당사자의 청구가 본안에서 인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중재판정부의 추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기 전에 중재판정부의 직권에 의해 승인한 임시 조치를 수정하거나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3.6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임시 조치와 관련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23.7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 및 판정의 이유가 되었던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3.8 중재판정부의 지배적 견해에 따라 임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임시 조치를 청구한 당사자는 그 임시 조치에 의해 야기된 비용과 손해에 대해 반대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 진행 중 언제든지 그러한 비용과 손해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23.9 일방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한 경우라도 이를 중재합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중재 합의의 포기라 보지 아니한다.

## 제 24조 비용에 대한 담보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게 중재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 25조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 25.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증거조사를 위해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직접 선정한 전문가와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다. 선임된 전문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특정 쟁점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에게 위임할 중재위탁요지서를 정하고 당사자들과 HKIAC에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 25.2 당사자들은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가 관련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관련 정보나 물건을 전문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요구한 정보의 관련성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와 전문가 사이의 분쟁은 중재판정부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 
- 25.3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그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 당사자들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용한 모든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
  - 25.4 보고서가 송달된 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자신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심리에 출석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심리에서 쟁점에 관한 증언을 위해 전문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제22.2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25.5 중재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에 대하여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 26조 기간의 경과

- 26.1 신청인이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종료를 선언해야 하나, 다만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하여 중재를 속행하기를 요청하면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26.2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속행할 수 있다.
- 26.3 당사자 일방이 이 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중재판정부의 지시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지 못한다면, 중재판정부는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 제27조 추가 당사자의 참가

- 27.1 추가 당사자가 제28조, 제29조에 의한 중재를 포함하여, 중재의 근거가 되는 이 규칙 하의 중재 합의의 구속력이 미치는 당사자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추가당사자가 중재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할 권한이 있다.
- 27.2 제27.1조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그 참가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관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추후 결정하는 권한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7.3 중재 과정에서 추가 당사자를 참가시키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HKIAC에 제출하여야 한다. HKIAC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 27.4 참가신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진행중인 중재사건번호
  - (b) 추가당사자를 포함한 각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c) 추가 당사자의 참가 신청
  - (d) 신청의 원인이 된, 또는 신청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기타 법률문서 증빙서류의 원용
  - (e)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
  - (f) 쟁점
  - (g) 신청 이유에 대한 법적 주장
  - (h) 신청 취지
  - (i) 참가 신청서의 사본 및 첨부문서가 모든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확인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전달 수단에 의해 송부되었거나 현재 송부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서

---

계약서의 사본 그리고 중재 합의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본이 참가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27.5 참가신청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추가 당사자는 HKIAC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추가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대리인(참가신청서에 제시된 사실과 다를 경우)
- (b) 중재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거나, 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항변
- (c) 제27.4조(a)항 내지 (q)항에 따라 신청에 개진된 주장에 대한 추가 당사자의 답변
- (d) 제27.4조(h)항에 따라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추가 당사자의 답변
- (e) 참가당사자의 다른 중재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사항
- (f) 참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사본 및 첨부문서가 모든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 확인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단에 의하여 송부되었거나, 현재 송부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서

27.6 중재의 추가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제3자는 참가신청서를 HKIAC에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에는 제27.4조가 적용된다.

- 
- 27.7 제27.3조 또는 제27.6조를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참가신청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HKIAC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a) 중재판정부가 추가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
  - (b) 제27조(a)항 내지 (g)항의 조항에 의해 참가신청서에 적시된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견;
  - (c) 이 규칙 제27.4조(h)항에 의한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
  - (d) 추가 당사자에 대한 기타 항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 (e) 의견서의 사본 및 첨부문서가 모든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 확인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단에 의하여 송부되었거나, 현재 송부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서
- 27.8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HKIAC가 확정하기 전에 HKIAC가 참가신청서를 받았다면, HKIAC는 추가 당사자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의한 중재를 포함한 이 규칙이 적용되는 중재 합의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HKIAC는 중재에 추가 당사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제27.8조에 따라 HKIAC의 결정에서 비롯된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 19.1조에 따라, 확정된 중재판정부가 판단한다.
- 27.9 제27.8조에 의한 HKIAC의 결정은 당사자 주장의 허용 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7.10 추가당사자가 중재에 참가하는 경우, HKIAC가 참가신청서를 수령한 날을 추가 당사자가 참가한 중재가 개시된 날로 간주한다.

---

27.11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 당사자가 중재에 참가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는 중재인을 지명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HKIAC는 이미 지명 또는 확정된 중재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HKIAC가 중재판정부를 선임한다.

27.12 제27.11조에 의한 중재인 선임의 취소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중재인의 선임 취소 전에 한 행위나 명령에 대한 유효성; 그리고

(b) 별표2 또는 3이 적용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할 요금이나 비용.

27.13 당사자는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중재에 추가 당사자를 참가시키기로 한 결정을 이유로 하여 판정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27.14 참가신청서가 제출된 후 HKIAC는 적절한 경우 관리 요금과 중재 판정부의 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8조 중재의 병합**

28.1 HKIAC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신청”) 당사자들 및 이미 확정된 중재인들과 협의한 후, 다음의 경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계속 중인 중재를 병합할 수 있다.

(a) 당사자들이 병합에 대해 합의한 경우; 또는

(b) 모든 신청이 같은 중재합의에 근거하거나; 또는

(c) 하나 이상의 중재 합의 내에서 이루어진 신청, 두 개 또는 모든 중재에서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같은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청권, 그리고 HKIAC가 중재합의의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28.2 중재절차의 병합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들과 확정된 중재인들에게 병합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28.3 HKIAC는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병합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나 이상의 중재 절차에서 한 명 이상의 중재인이 지명, 승인되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그 중재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 28.4 HKIAC가 두 개 이상의 중재 절차를 병합하기로 결정한 경우,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HKIAC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개시된 중재에 병합되어야 한다. HKIAC는 이 결정의 사본을 모든 중재의 모든 당사자들과 확정된 중재인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 28.5 하나 이상의 중재를 병합하는 결정은 병합 결정이 나기 전의 관련 중재에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명령이나 행위의 유효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8.6 HKIAC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중재를 병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HKIAC는 이미 지명되거나 확정된 중재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HKIAC는 병합된 중재 절차에 대한 중재판정부를 선임한다.
- 28.7 제28.6조에 따른 중재인 선정의 취소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중재인 선정 취소 전에 취한 행위 또는 중재인이 내린 명령의 유효성;
  - (b) 별표2 또는 3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중재인의 수당 및 경비; 그리고
  - (c) 제척기한 제한이나 그와 유사한 조항이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이나 항변이 제기된 날짜

---

28.8 당사자는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HKIAC의 중재를 병합시키기로 한 결정을 이유로 하여 병합된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28.9 병합신청서가 제출된 후에 HKIAC는 적절한 경우 관리 요금과 중재판정부의 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9조 다수계약에 대한 단일 중재**

29.1 다음의 경우 다수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청구는 하나의 중재를 통해 판정할 수 있다.

(a) 중재의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의 근거가 된 각 중재합의에 구속되는 경우;

(b) 중재의 근거가 된 각 중재합의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가 공통되는 경우

(c) 동일한 거래나 일련의 거래에 관하여 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d) 당해 신청과 양립 가능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29.2 당사자들은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제29조에 의한 단일 중재절차의 개시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의 유효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포기한다.

---

## 제 30 조 절차의 종료

- 30.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선언한다. 절차 종료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제30.2조에 따라 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한, 추가 주장, 서면 또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 30.2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을 선고하기 전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 제 31 조 권리의 포기

당사자 일방이 이 규칙(중재합의를 포함한다)의 조항 또는 규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장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의 및 명령

### 제32조 결의

- 32.1 중재인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나 기타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과반수 결의가 없는 경우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 32.2 중재판정부의 모든 중재인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의장 중재인은 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33조 중재비용

- 33.1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중재비용에 관하여 결정한다. “비용”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한한다.
- (a)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중재판정부의 수당;
  - (b) 중재인들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 상당액;
  - (c)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및 기타 조력에 대한 비용;
  - (d) 증인 및 전문가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 상당액;
  - (e)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는 비용이 중재 절차 내에서 청구된 경우;
  - (f) 별표1에 의해 HKIAC에 지불하여야 하는 신청요금 및 관리요금
- 33.2 중재판정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33.1조에 의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부가 정한 비율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 33.3 제33.1조(e)항에 의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는 비용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 33.4 제28조에 의해 수 개의 중재가 병합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병합된 중재의 비용을 제33.2조와 제33.3조에 의해 결정한다. 비용은 지명 또는 선정된 중재재판부의 수당과 이 후 병합된 중재에서 소비된 비용 등을 포함한다.
- 33.5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의 종결 명령이나 화해 중재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또는 HKIAC가 제33.1조에 따라 해당 명령이나 판정에서 중재비용에 관한 결정을 한다.

## 제 34 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

- 34.1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중국판정뿐만 아니라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의 형태로 하나 또는 분리된 수 개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경우에는 중간판정에서 비용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34.2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하며, 중국적이며 당사자 및 당사자를 통하여 혹은 당사자 하에 청구하는 모든자를 구속한다. 당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판정의 집행에 있어 사법기관에 상소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 34.3 당사자들은 제28조에 의한 병합절차나 제29조에 의한 중재에 의해 내려진 판정이나 명령을 포함한 모든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이나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 34.4 당사자들이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에는 판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34.5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와 제14조에 의한 중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중재지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 3인 중재의 경우, 그 중 한 명이라도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재판정문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인이 3명일 경우 그 중 1명이라도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34.6 중재인들이 유치권을 갖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인들이 서명하고 HKIAC 인장을 날인한 중재판정문 원본을 각 당사자와 HKIAC에 제공한다. HKIAC는 중재판정문 원본을 보관한다.

## **제 35 조 적용 법규, 우호적 중재**

- 35.1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법규범에 의해 분쟁의 실체를 판단해야 한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관할지의 법 또는 법체계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할지의 국제사법이 아닌 실체법을 정한 것을 보아야 한다.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적용법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 35.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중재판정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우호적 중재 또는 형평과 선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35.3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상관습을 고려할 수 있다.

---

## 제36조 화해 기타 종결 사유

- 36.1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종료를 명하거나, 혹은 당사자들이 요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수락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화해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유를 설시할 의무가 없다.
- 36.2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36.1조 이외의 사유로 중재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종결을 명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이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의 종결을 명한다.
- 36.3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의 종결 명령문 또는 화해중재판정문 사본에 중재인들의 서명을 받아 당사자들과 HKIAC에 제공한다. 화해중재판정에는 제 34.2조, 제34.3조, 제34.5조 및 제34.6조가 적용된다.

## 제37조 중재판정의 정정

- 37.1 당사자 일방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의 오기, 오산, 오타 또는 기타 판정문에 있는 유사한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당사자가 정정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
- 37.2 중재판정부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중재 판정문 정정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을 정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7.3 중재판정부는 중재 판정 선고일 후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중재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 37.4 중재판정부는 (a)제38조에 의한 중재판정문의 쟁점 또는 일부에 대한 해석이나; (b)제39조에 의한 중재의 추가 판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재 판정을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7.5 판정의 정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34.2조 내지 제 34.6조가 적용된다.

### **제 38 조 중재판정의 해석**

- 38.1 당사자 일방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당사자가 해석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
- 38.2 중재판정부는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해석을 내린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8.3 중재판정부는 (a)제37조에 의한 중재판정의 정정이나 (b)제39조에 의한 추가판정으로 인하여 추가해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해석을 할 권한이 있다.
- 38.4 제38조에 의한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제 34.2조 내지 제34.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제 39 조 추가판정

- 39.1 당사자 일방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중재판정부에, 중재에 제기하였으나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판정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
- 39.2 중재판정부는 추가판정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단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9.3 중재판정부는 (a)제37조에 의한 판정의 정정; 또는 (b)제38조에 의한 판정의 해석으로 인하여 추가판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판정을 할 권한이 있다.
- 39.4 추가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제34.2조 내지 제34.6조가 적용된다.

## 제 40 조 비용의 예납

- 40.1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가능한 한 빨리, HKIAC는 제33.1조 (a)항, (b)항, (c)항 및 (f)항에 의해 각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예납할 것을 요청한다. HKIAC는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중재판정부에 제공한다.
- 40.2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한 경우, 또는 정황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HKIAC는 분리하여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 40.3 HKIAC는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들에게 HKIAC에 추가예납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HKIAC는 그러한 요청서 사본을 중재판정부에 제공한다.

- 
- 40.4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된 예납금을 HKIAC에 전액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HKIAC는 당사자 일방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납입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그래도 예납이 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중지 또는 종결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신청 또는 반대신청에 대하여 중재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40.5 중재판정부는 중국판정에서 HKIAC가 당사자로부터 납입 받은 예납금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HKIAC는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40.6 HKIAC는 당사자들이 예치한 예납금을 홍콩에서 인가 받은 유수의 예치기관에 개설된 이자부 계좌에 예치한다. HKIAC는 계좌를 선택할 때 예치된 금액을 즉시 사용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장 기타조항

### 제41조 신속절차

41.1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HKIAC에 서면으로 중재가 제41.2조에 의해 진행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a) 신청과 반대신청(또는 상계항변)의 가액의 총합이 HKD 25,000,000(2천 5백만 홍콩달러)를 넘지 않는 모든 분쟁의 경우; 또는
- (b)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 (c) 예외적인 긴급한 상황인 경우.

41.2 HKIAC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41.1조에 의한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전 항의 조항에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한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a) 중재합의에서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사건은 단독중재인에 회부한다;
- (b) 중재합의에서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HKIAC는 당사자들에게 단독중재인에게 회부하는 합의를 하도록 권고한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 (c) HKIAC는 스스로 설정한 기간과 이 규칙에 규정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d) 답변서 제출 이후,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유서 1회 및 답변이유서(및 반대신청) 1회를 제출할 수 있고,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이유서를 1회 제출할 수 있다.
- (e) 중재판정부가 1회 또는 그 이상 심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오직 서면심리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결정을 한다.

---

(f) 중재판정은 HKIAC가 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HKIAC는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g) 당사자들이 판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이유를 약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1.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41조에 의한 “신속 절차”는 제28조에 의한 병합절차 또는 제29조에 의해 개시되는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제 42 조 비밀유지

42.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표, 공개 또는 전달할 수 없다.

(a) 중재합의에 근거한 중재; 또는

(b) 중재에서 내려진 판정

42.2 제42.1조는 중재판정부, 별표4에 의해 임명된 긴급중재인, 전문가, 증인, 중재판정부와 HKIAC의 서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2.3 제4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제42.1조에서 언급된 정보를 공표, 공개, 전달할 수 있다;

(a)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의 법적 절차에 있어

(i) 당사자의 법적 권리나 법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주장하기 위하여; 또는

(ii) 제42.1조에서 언급된 판정을 집행하거나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 
- (b) 당사자에게 행정부, 규제기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출판, 공개, 전달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 (c) 현실적 또는 잠재적 증인이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 기타 당사자의 조언자에게 하는 경우.

42.4 중재판정부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2.5 중재판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 또는 요약문이나 발췌본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 (a) HKIAC 앞으로 공표 요청이 전달된 경우;
- (b)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모두 삭제한 경우; 및
- (c) HKIAC가 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정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 43 조 면책

43.1 HKIAC의 이사회, 위원회, 부위원회 또는 이 규칙에 따라 활동하기 위해 HKIAC가 선임한 기관 및 사람, HKIAC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의 다른 구성원들, 중재판정부, 긴급중재인, 중재판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가와 서기 등 HKIAC에서 선임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부정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3.2 중재판정이 선고되고,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 정정, 추가판정을 할 여지가 없어진 후에는, HKIAC, 중재판정부, 긴급중재인,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중재판정부의 서기는 누구에게도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관한 진술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당사자도 여기 열거된 자를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한다.

# 별표1 신청요금과 관리요금

(모든 금액은 홍콩 달러(이하 “HKD” 라고 한다)  
로 표시한다)

(2015. 2월1일 부터 시행)

## 제 1 조 신청 수수료

- 1.1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HKIAC 홈페이지에 공고된 바에 따라 HKIAC가 산정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1.2 신청인이 신청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HKIAC는 제4.7조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1.3 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2 조 HKIAC 관리요금

2.1 HKIAC의 관리요금은 아래 표와 같이 부과한다.

분쟁금액 (HKD)	관리요금 (HKD)
이하 400,000	19,800
이상 400,001 이하 800,000	19,800 + 400,000을 초과한 금액의 1.300%
이상 800,001 이하 4,000,000	25,000 + 800,000을 초과한 금액의 1.000%
이상 4,000,001 이하 8,000,000	57,000 + 4,000,000을 초과한 금액의 0.545%
이상 8,000,001 이하 16,000,000	78,800 + 8,000,000을 초과한 금액의 0.265%
이상 16,000,001 이하 40,000,000	100,000 + 16,000,000을 초과한 금액의 0.200%
이상 40,000,001 이하 80,000,000	148,000 + 40,000,000을 초과한 금액의 0.110%
이상 80,000,001 이하 240,000,000	192,000 + 80,000,000을 초과한 금액의 0.071
이상 240,000,001 이하 400,000,000	305,600 + 240,000,000을 초과한 금액의 0.059%
이상 400,000,000	400,000

- 
- 2.2 분쟁금액을 결정할 때는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을 합산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한 결과 해당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추가 업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상계항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2.3 분쟁금액을 결정할 때 이자에 대한 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에 대한 청구금액이 원금에 대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쟁금액을 결정할 때 이자에 대한 청구금액만 고려한다.
  - 2.4 제18.2조, 제27.14조, 제28.9조에 의한 경우 또는 HKIAC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HKIAC의 관리요금은 별표 제2.1조에 의해 계산된 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 2.5 분쟁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HKIAC의 관리요금은 HKIAC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6 홍콩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정된 분쟁 가액은 중재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 또는 새로운 신청이나 상계항변 또는 신청 또는 답변의 변경이 제출된 당시의 HSBC 은행의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야 한다.

**별표2**  
**중재판정부의 수당, 경비 그리고 조건**  
**시급으로 계산한 경우**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

**1. 적용 범위 및 해석**

- 1.1 제9.2조에 따라 당해 별표는 중재판정부의 수당과 비용이 제10.1조(a)항에 따라 결정되는 중재 및 별표4에 따른 긴급중재인의 선임에 적용된다.
- 1.2 HKIAC는 당해 별표의 적용 범위 및 조건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
- 1.3 당해 별표는 별표2에 근거한 중재판정부의 요금, 비용, 조건과 중재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에 시행되고 있는 시급에 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보완된다.

**2. 중재판정부에 대한 수당 지급**

- 2.1 일반적으로 제40조에 의해 양 당사자가 납부한 예치금으로부터 HKIAC가 중재판정부에 수당을 지급한다. HKIAC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율로 잠정적, 종국적 비용을 각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2 요금을 납부해야 할 때 자금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 HKIAC는 비용 청구서를 각 당사자들 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 2.3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으면, 홍콩달러로 중재판정부에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4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했는지와 상관 없이, 당사자들은 중재인 수당과 비용을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다.

---

### 3. 중재 판정부의 경비

- 3.1 중재판정부는 당해 별표 제1.3조에서 언급된 시행세칙에 의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상환 받는다.
- 3.2 중재판정부의 경비는 당해 별표 제9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시급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관리비용

당사자들은 심리 장소의 임차료, 통역 및 심리 기록 비용 등과 같이 중재의 목적과 관련된 행정 지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상당 비용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제40조에 의한 예납금에서 바로 지급된다.

### 5. 교체된 중재인에 대한 수당과 경비의 지급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해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중재인 수당 결정 방법, 중재인에 의해 중재가 진행된 정도, 사안의 복잡성 등 사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교체된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를 결정해야 한다.

### 6. 중재판정부의 서기에 대한 수당과 경비의 지급

제13.4조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서기를 임명한 경우, 그 서기는 중재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HKIAC 홈페이지에 공고된 HKIAC가 정한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 서기에 대한 수당과 경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중재판정부는 제33.1조 (c)항에 의해 서기에 대한 수당과 경비의 총액을 결정해야 한다.

---

## 7. 판정에 대한 유치권

HKIAC와 중재판정부는 미지급된 요금과 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 수여를 거부할 수 있다.

## 8. 준거법

당해 별표의 조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의 해석과 규율은 홍콩의 법률에 따른다.

## 9. 중재판정부의 수당

- 9.1 중재인은 중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 시급에 의한 상당 보수를 받는다.
- 9.2 당해 별표 제9.3조와 제9.4조에 따라, 당해 별표 제9.1조에 의한 요금 비율은 제10.2조에 따라 동의한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9조에 따라 HKIAC가 중재인을 선정하기 전에 중재인은 당해 별표 제9조에 의한 요금 비율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
- 9.3 합의된 중재인의 시급은 중재 신청서가 접수될 당시 HKIAC 홈페이지에 게시된 HKIAC의 요금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9.4 당해 별표 제9.3조에 따라, 중재인은 합의된 시급을 검토한 후, HKIAC에 의해 선임된 후 매년 10%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된 시급을 인상할 수 있다.
- 9.5 중재의 모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 또는 HKIAC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더 높은 요금비율이 부과될 수 있다.

---

9.6 만약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해야 하는 경우,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경비를 청구하고 상환 받을 수 있다.

- (a)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동하는 시간에는 합의된 시급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 (b) 업무를 수행하며 이동하는 시간에는 시급 전체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10. 해약금

10.1 예정되었던 심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요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a) 예정되었던 심리가 중재판정부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아무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 (b) 예정된 심리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하루당 해당 시급의 8배에 대한 75%가 청구된다;
- (c) 예정된 심리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에 의해 취소된 경우 하루당 해당 시급의 8배에 대한 50%의 시급이 청구된다;
- (d) 만약 예정된 심리가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상 남은 때 당사자 일방에 의해 취소된 경우, 아무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 (e) 이상의 모든 경우, 심리가 예정된 날 중에서 사건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공제될 것이다.

10.2 심리 기일이 각 당사자의 합의 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은 이후 비용을 할당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

## 별표3

### 중재 판정부의 수당, 경비 및 조건

#### 분쟁 가액에 따라 계산한 경우

(모든 금액은 홍콩 달러에 의해 계산되고, 이하  
“HKD” 라고 한다)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

#### 1. 적용 범위와 해석

- 1.1. 아래의 별표 제1.2조와 제 9.2조에 따라, 당해 별표는 제10.1조(b)항에 의해 중재판정부의 수당과 경비가 결정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 1.2. 당해 별표는 별표4에 근거한 긴급중재인의 선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3. HKIAC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의 적용 범위 및 당해 별표의 조건을 해석할 수 있다.
- 1.4. 당해 별표 중재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시행되고 있는 시행세칙에 의해 별표3에 근거한 중재판정부의 수당, 경비, 조건 및 분쟁 가액의 총합에 관하여 그 내용이 보충된다.

#### 2. 중재판정부에 대한 수당 지급

- 2.1.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한 수당은 HKIAC가 제40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납부한 예치금으로부터 지급한다. HKIAC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율로 잠정적인 또는 종국적인 비용을 각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2. 요금을 납부해야 할 때 자금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 HKIAC는 비용 청구서를 각 당사자들 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 
- 2.3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에 홍콩달러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4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했는지와 상관 없이, 당사자들은 중재 수당과 비용을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다.

### **3. 중재판정부의 경비**

- 3.1 중재판정부는 당해 별표 제1.4.조 규정에 의한 시행세칙에 따라 상당한 경비를 상환 받는다.
- 3.2 중재판정부의 경비는 당해 별표 제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시급으로 계산한 중재판정부의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관리비용**

당사자들은 심리장소의 임차료, 통역 및 심리 기록 비용 등과 같이 중재의 목적과 관련된 행정 지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상당비용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제40조에 의한 예납금에서 직접 지급된다.

### **5. 교체된 중재인에 대한 요금과 비용의 납부**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해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HKIAC는 중재인의 수당을 결정하는 방법, 중재인이 수행한 업무, 분쟁물의 복잡성 등을 감안한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교체된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를 결정해야 한다.

### **6. 중재판정부의 수당에 대한 결정**

- 6.1 중재판정부의 요금은 아래의 표에 따라 계산될 것이다. 다음 표에 따라 계산된 요금은 각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최대값이다.

분쟁금액 (홍콩달러: HKD)		증재인수당 (홍콩달러: HKD)
이하	400,000	계쟁금액의 11.000%
이상 이하	400,001 800,000	44,000 + (400,000 초과 금액의) 10.000%
이상 이하	800,001 4,000,000	84,000 + (800,000 초과 금액의) 5.300%
이상 이하	4,000,001 8,000,000	253,600 + (4,000,000 초과금액의) 3.780%
이상 이하	8,000,001 16,000,000	404,800 + (8,000,000 초과금액의) 1.730%
이상 이하	16,000,001 40,000,000	543,200 + (16,000,000 초과금액의) 1.060%
이상 이하	40,000,001 80,000,000	797,600 + (40,000,000 초과 금액의) 0.440%
이상 이하	80,000,001 240,000,000	973,600 + (80,000,000 초과금액의) 0.250%
이상 이하	240,000,001 400,000,000	1,373,600 + (240,000,000 초과금액의) 0.228%
이상 이하	400,000,001 600,000,000	1,738,400 + (400,000,000 초과금액의) 0.101%
이상 이하	600,000,001 800,000,000	1,940,400 + (600,000,000 초과금액의) 0.067%
이상 이하	800,000,001 4,000,000,000	2,074,400 + (800,000,000 초과 금액의) 0.044%
이상	4,000,000,000	3,482,400 +(4,000,000,000 초과 금액의) 0.025% (최대) 12,574,000

- 
- 6.2 중재판정부의 수당은 사건이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때부터 종국판정을 내릴 때까지 중재판정부가 수행한 임무에 대하여 지급된다.
  - 6.3 분쟁금액을 결정할 때는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을 합산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한 결과 해당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추가 업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한, 상계항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6.4 분쟁금액을 결정할 때 이자에 대한 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에 대한 청구금액이 원금에 대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쟁금액을 결정할 때 이자에 대한 청구금액만 고려한다.
  - 6.5 제10.3 (c)조, 제18.2조, 제27.14조 및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HKIAC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요금은 당해 별표 제6.1조에 의해 계산된 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 6.6 분쟁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HKIAC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의 수당을 결정한다.

## 7. 판정에 대한 유치권

HKIAC와 중재판정부는 미지급된 요금과 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요금과 비용을 완납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 수여를 거부할 수 있다.

## 8. 준거법

당해 별표의 조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의 해석과 규율은 홍콩의 법률에 따른다.

## 별표4 긴급중재인 절차

###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

1. 긴급구제가 필요한 당사자는 중재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HKIAC 에 긴급중재인(이하 “긴급 중재인”이라 한다)의 선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서는 제2.1조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한다. 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신청인과 대리인의 성명, (당시에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b)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과 중재에 회부된 분쟁에 대한 기재;
  - (c) 긴급구제 신청 취지;
  - (d) 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구성까지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
  - (e) 신청인의 긴급 구제 신청 권원;
  - (f) 관련 계약서 그리고 특히 중재 합의서
  - (g) 언어, 긴급구제의 관할지, 그리고 준거법에 관한 의견
  - (h) 당해 별표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이하에서는 “신청 예치금”이라 한다)을 수표로 예치하거나 HKIAC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통하여 납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 그리고
  - (i) 선임 신청서의 사본 및 첨부문서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하나 이상의 전달 수단에 의해 동시에 송부되었거나, 현재 송부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의 확인서

- 
3. 신청서는 신청인이 적절하다고 여기거나 신청서의 조사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면과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4. 긴급 중재인을 위한 것과 HKIAC를 위한 것으로 두 장의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5. HKIAC가 그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 예치금을 납입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긴급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 신청 예치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 HKIAC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라 HKIAC에 의해 결정된다. 신청 예치금은 HKIAC의 관리 요금, 긴급중재인 수당과 경비로 구성된다. 긴급중재인의 요금은 별표2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시급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이다. HKIAC는 사건의 성질과 긴급중재인과 HKIAC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성질을 고려하여, 긴급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중 언제라도 긴급중재인의 요금 또는 HKIAC의 관리요금을 인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인상된 요금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다.
  7. 긴급중재인이 선임되면, HKIAC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긴급 중재인에게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 후 양 당사자 간의 서면은 긴급중재인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은 반대 당사자와 HKIAC에 송부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이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서면의 사본은 또한 HKIAC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8. 제11조가 긴급중재에 적용되며 제11.7조 및 제 11.9조의 기한은 3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 
9. 긴급중재인이 사망하거나, 유효하게 기피되거나, 제척되거나 또는 사임한 경우, HKIAC는 2일 이내에 교체할 긴급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긴급중재인이 선임을 철회하거나 당해 별표 제8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긴급중재인의 선임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1.6조에 열거된 사유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긴급중재인이 교체된 경우, 교체된 긴급중재인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이 교체되거나 임무 수행을 중단한 때부터 긴급 구제 절차를 재개한다.
  10.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장소가 긴급 구제 절차의 중재지가 된다. 당사자가 긴급 구제 절차의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긴급 구제 중재지는 홍콩으로 하며, 이는 제14.1조에 의해 중재지를 정하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긴급중재인은 긴급 구제 절차에 내재하는 위급성을 고려하고, 각 당사자들이 그 신청에 대해 진술할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긴급중재인은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및 적용범위를 포함하여 긴급중재인에게 관할권이 없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고, 당해 별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12. 신청에 대한 긴급중재인의 모든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이하 “긴급판정”이라 한다)은 HKIAC가 긴급중재인에게 사건을 회부한 후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HKIAC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사건이 도중에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경우에도 긴급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 
14. 긴급판정은
- (a)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b) 결정 일자를 기재하고, 제23.1조에 따라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긴급중재인이 긴급구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한 결정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긴급중재인에 의해 서명 날인되어야 한다.
15. 긴급결정은 긴급구제 절차의 비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종국적으로 어느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또는 당사자 간에 어떤 비율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긴급구제절차의 비용은 HKIAC의 관리 비용, 긴급중재인 수당과 경비, 그리고 긴급구제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소요한 합리적인 기타 법정 비용을 포함한다.
16. 긴급결정은 제23조에 따라 내려진 임시적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중재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긴급결정을 따라야 할 책임을 진다.
17.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8. 당사자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긴급결정은 긴급중재인 또는 이후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변경, 중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 
19. 긴급결정은 다음 상황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 (a) 긴급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가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 (b) 중재판정부가 최종판정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 (c) 최종 판정이 나기 전에 모든 청구를 포기하거나 중재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 (d) 중재판정부가 긴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성되지 않는 경우. 이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HKIAC에 의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20. 당해 별표의 제13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일단 구성되면 긴급중재인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21. 중재의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신청의 원인이 되었던 분쟁에 관하여 긴급중재인으로 담당했던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이 될 수 없다.
22. 긴급중재절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관할 법원에 위급한 임시적 또는 보전 조치를 신청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 당해 별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 긴급중재인은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4. 긴급중재인은 중재 판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감사의 말

HKIAC는 이 규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언 및 지도를 해주신 이하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enri Alvarez; Chiann Bao; Denis Brock; Peter Caldwell; Y K Chan; Teresa Cheng, John Choong, Peter Chow; Russell Coleman; Justin D'Agostino; Nils Eliasson; Darren Fitzgerald; Paulo Fohlin; Matthew Gearing; Peter Goldsmith; Bernard Hanotiau; Cameron Hassall; Brenda Horrigan; Neil Kaplan; Gabrielle Kaufmann-Kohler; James Kwan; William Leung; Joe Liu; Arthur Marriott; Michael Moser; Robin Peard; Lucy Reed; Kim Rooney; Kathryn Sange tackpool-Moore; Christopher Tahbaz; VV Veeder; Colin Wall; Huen Wong; Philip Yang; Yeung Man Sing and Briana Young.

더불어 이 규칙의 한국어 번역본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세종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규칙의 원문은 영어본입니다. 영어본과 번역본이 불일치하는 경우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영어본에 따라 해석됩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relating to dispute resolution in Hong Kong,  
please contact:

The Secretary-General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38/F, Two Exchange Square, 8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Tel: +852 2525 2381 Fax: +852 2524 2171

E-mail: [adr@hkiac.org](mailto:adr@hkiac.org) Webpage: <http://www.hkiac.org>

